

2025년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개요

2025. 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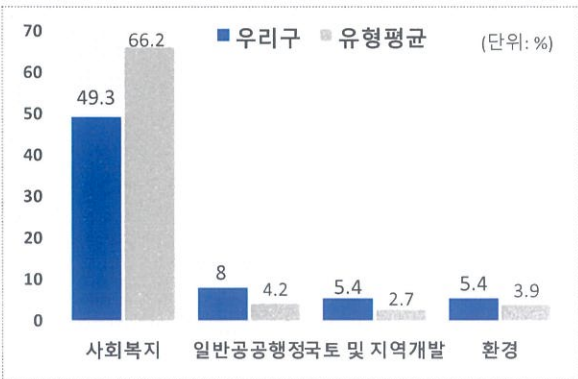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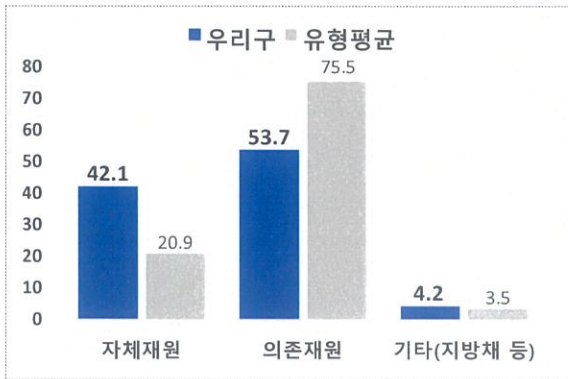
□ 2025년 예산규모

예산규모 (통합회계) 5,957억	=	일반회계 5,716억	+	기타 특별회계 124억	+	기금 117억
--------------------------	---	----------------	---	--------------------	---	------------

□ 자원별 세입 규모 및 유형평균

□ 분야별 세출 규모 및 유형평균

※ 유형평균은 우리 지자체와 재정규모 및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



- 우리구의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42.1%로, 유형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 세출예산의 49.3%가 사회복지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며,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주요 재정지표값 및 유형평균 대비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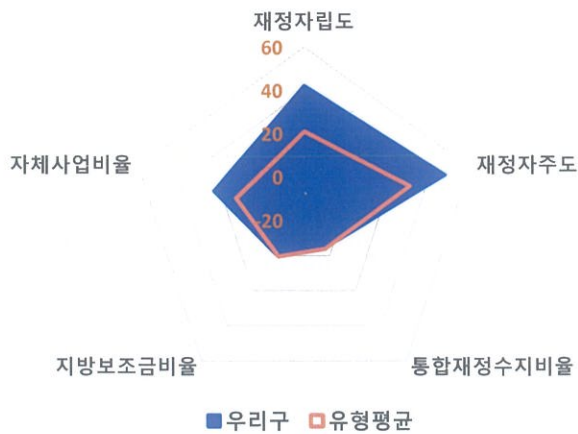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42.07%

재정자주도 48.03%

통합재정수지비율 -4.1%

지방보조금비율 0.65%

자체사업비율 23.73%



※ 그래프에서 우리구 영역(파란색)이 바깥쪽에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재정운용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보조금비율'의 경우 하향지표로 우리구 영역(파란색)이 안쪽에 있을수록 양호한 지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심상경(032-760-7063)

1 공통공시 총괄

지자체 유형 **광역시 I**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		'25년도	전년('24년) 유형 평균
1 예산규모	1-1 예산 규모 * 통합회계	5,957억	5,704억 9,197억
	- (회계별) 일반회계 5,716억, 기타특별회계 124억, 기금 117억 - 전년대비 약 228억 증가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2 세입예산(자원별) * 일반회계	5,716억	5,337억 8,505억
	- (자원별 세입 예산) 보조금 2,732억, 지방세 1,724억, 세외수입 681억 등 입니다.		
2 재정여건	1-3 세출예산(분야별) * 일반회계	5,716억	5,337억 8,505억
	- (분야별 세출 예산) 사회복지 2,818억, 기타 877억, 일반 공공행정 455억, 국토 및 지역개발 308억 등 입니다.		
	1-4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6,299억	5,989억 9,389억
	- 우리구 및 우리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역 통합 예산규모는 6,299억으로 전년 대비 약 310억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3,090억 낮은 수준입니다.		
2 재정여건	2-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42.07%	38.05% 20.91%
	-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스스로 마련한 자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 구의 '25년 재정자립도는 42.07%로 전년대비 4.02%p 증가하였으며 유형평균보다는 높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2-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48.03%	45.56% 31.08%
	-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원의 비율입니다. 우리구의 '25년 재정자주도는 48.03%로 전년대비 2.47%p 상승했으며 유형평균보다도 높아 양호한 편입니다.		
3 재정운용계획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적자(-238억)	-289억 -325억
	- 통합재정수지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올해 우리구의 통합재정수지는 238억 적자였으나 작년보다는 개선되었으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 적자 폭은 양호한 편입니다.		
	3-1 중기지방재정계획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우리구 예산은 '25년 6,534억원, ~ '29년 6,421억으로 연평균 -0.4%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재정운용계획	3-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구는 '25년 총 38개 사업(총 예산 156억원)에 대해 여성-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지자체는 '25년 총 71개 사업(총 예산 13억)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하늘체육공원, 실개천 휴게공간 조성, 공항신도시 1호 일반광장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3-4 성과계획서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 재정운영계획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9억	2.0억 3.0억
-----	-----------------------------------	------	--------------

- 우리구는 '25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1.1억, 국제화 여비로 약 1.8억원, 총 2.9억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9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25억	20억 25억
-----	-------------------------------	-----	------------

- 우리구에서 '25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2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억원 증가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3-8	업무추진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3.8억	3.5억 5.0억
-----	-------------------------------	------	--------------

- 우리구의 '25년 구청장장·부구청장장·실국장 및 동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억, 시책업무 추진비는 1.7억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유형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일반회계	1.6억	1.5억 2.8억
-----	----------------------------	------	--------------

- 우리구에서 '25년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추진, 의원 국외여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6억입니다. 전년대비 4백만원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2.8억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3-10	지방보조금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38억	37억 49억
------	-------------------------------	-----	------------

- 우리구가 '25년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총 38억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47억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78억	27억 12억
------	---	-----	------------

- 우리구가 '25년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을 위해 지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301-03)은 78억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12억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 우리구가 '25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18억, 공무원 일·숙직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2억,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21억입니다.

3-13	예비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25억(일반예비비)	신규지표 24억
------	---------------------------	------------	-------------

- 우리구가 '25년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25억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약 0.43%입니다.

4 재정운영성과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해당없음
-----	-------------------------------	------

4-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해당없음
-----	------------------------------	------

4-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없음
-----	--------------------	------

4-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
-----	----------------------	------

※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당초예산 총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 각 유형평균은 2월 22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통합재정 개요 작업 결과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공시사항

1 예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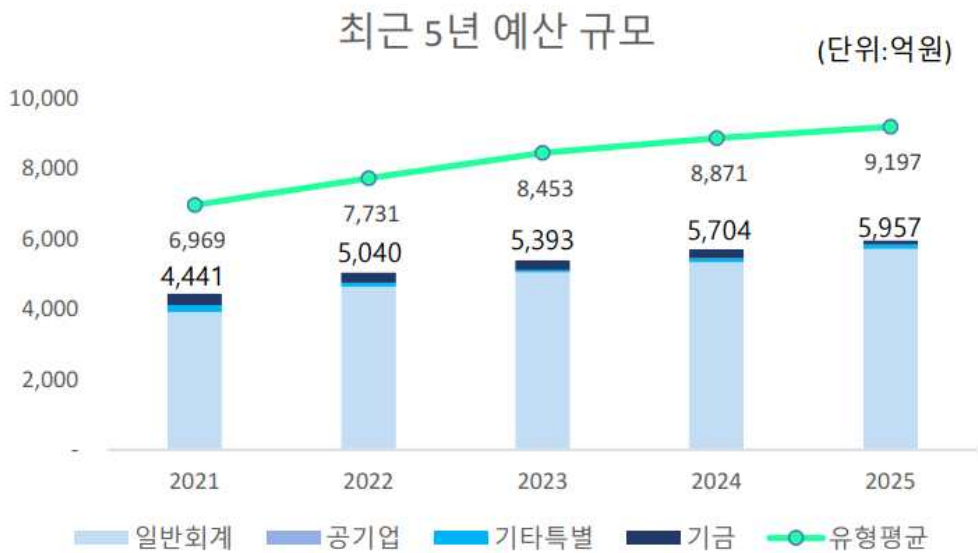
1-1 예산 규모

☐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되며, 이를 합쳐 통합회계라고 합니다. 우리구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5,957억이며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2025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57	5,716	0	124	117



우리 구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최근 5년 지속 상승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①-2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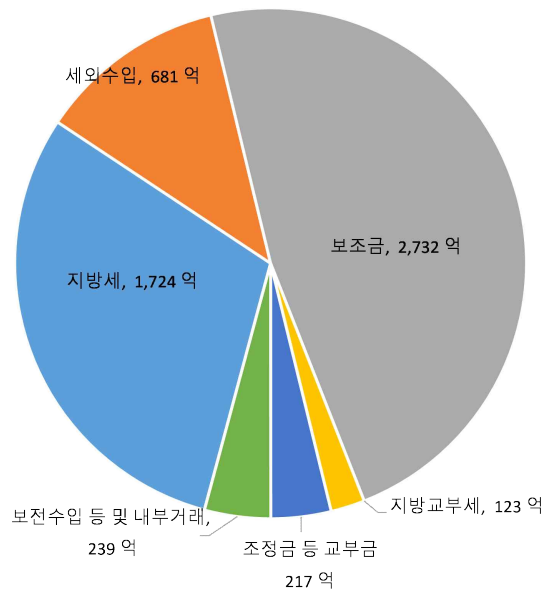
- 1년 동안 인천 중구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에 따라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57	5,716	0	124	117

❖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재원	2025년	
	금액 (억원)	비중 (%)
합 계	5,716	100
지방세	1,724	30.2
세외수입	681	11.9
지방교부세	123	2.1
조정교부금 등	217	3.8
보조금	2,732	47.8
지방채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9	4.2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우리 구는 세입의 약 42.1%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53.7%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① - 3 세출예산 규모(분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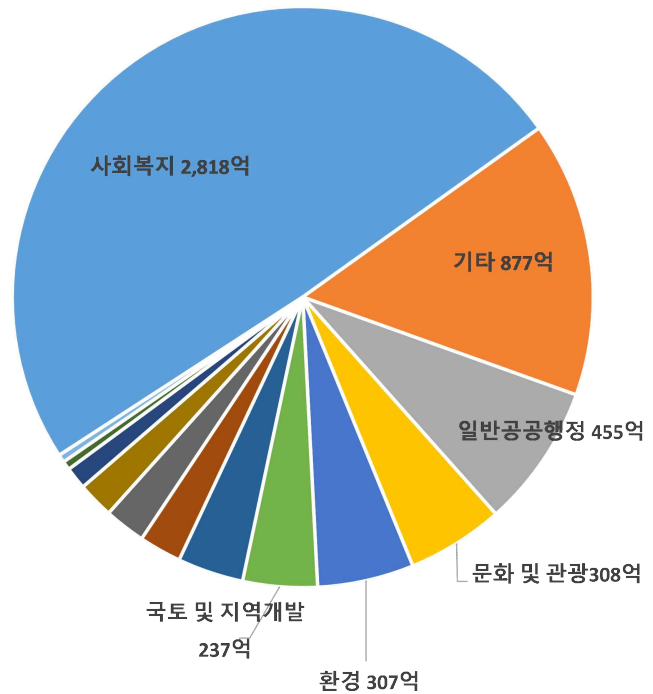
- 1년 동안 인천 중구의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세출예산은 그 기능에 따라 교육, 보건, 환경 등 총 13개 분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각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57	5,716	0	124	117

❖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세출분야	2025년	
	금액(억원)	비중(%)
합 계	5,716	100
사회복지	2,818	49.3
기타	877	15.3
일반공공행정	455	8.0
국토 및 지역개발	308	5.4
환경	307	5.4
문화및관광	237	4.1
교통및물류	210	3.7
보건	135	2.4
교육	131	2.3
농림해양수산	115	2.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1	1.2
공공질서 및안전	28	0.5
예비비	25	0.4
과학기술	0	0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우리 구는 세출의 약 49.3%를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 및 문화 및 관광 순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① - 4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인천 중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 (B)	증감율 (B-A)/A
합 계	5,989	6,299	310
자치단체	5,704	5,957	253
공사·공단	181	217	35
출자·출연기관	104	126	22

- ◆ 공사·공단(1개)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 ◆ 출자출연기관(1개) : 인천중구문화재단

최근5년 지역통합재정통계

(단위:억원)



우리 구의 지역통합재정예산 규모는 지속 상승추세입니다.

2 재정 여건

2-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text{※ 재정자립도} = \{(\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5년도 인천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2.07%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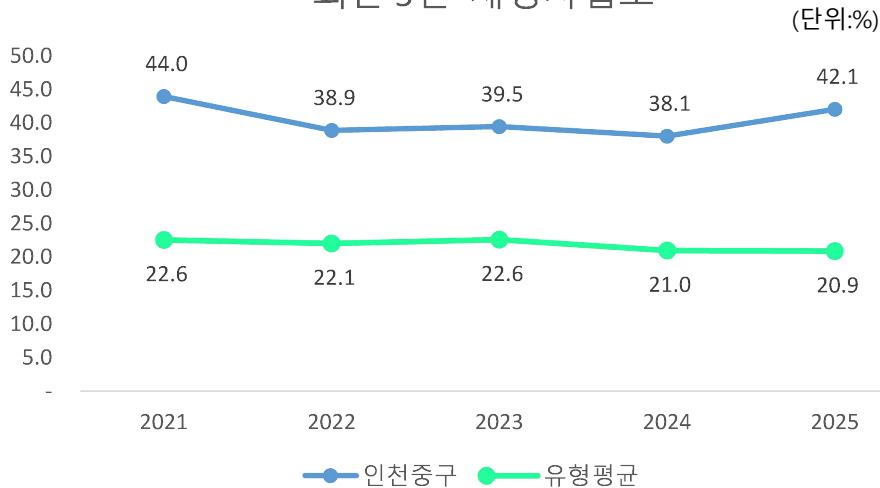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예산규모 (A=B+C+D+E)	자체수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2.07	5,716	2,405	3,072	0	239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최근 5년 재정자립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② - 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text{※ 재정자주도} = \{(\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 / \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5년도 인천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8.03%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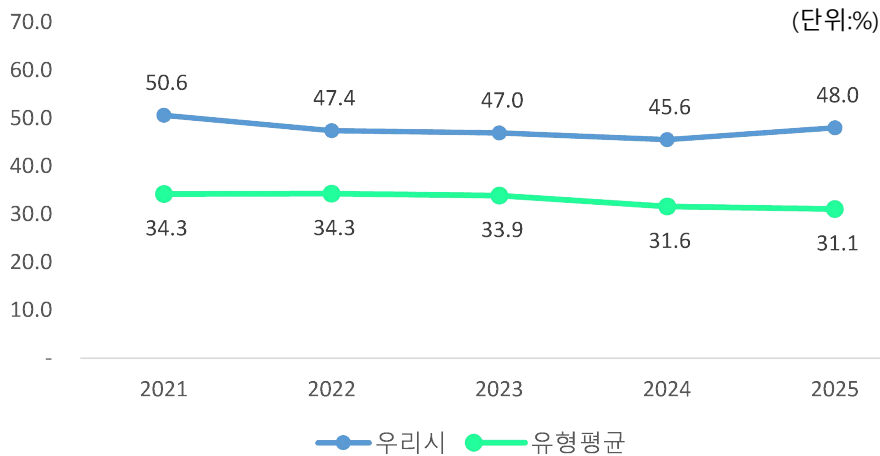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C)/A	세입 합계 (A=B+C+D +E+F)	자체수입* (B)	자주재원** (C)	보조금 (D)	지방채 (E)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F)
48.03	5,716	2,405	340	2,732	0	239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 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은 자주재원에 불포함

최근 5년 재정자주도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24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 대비 높은 편입니다.

②-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5년 인천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38억으로 적자입니다.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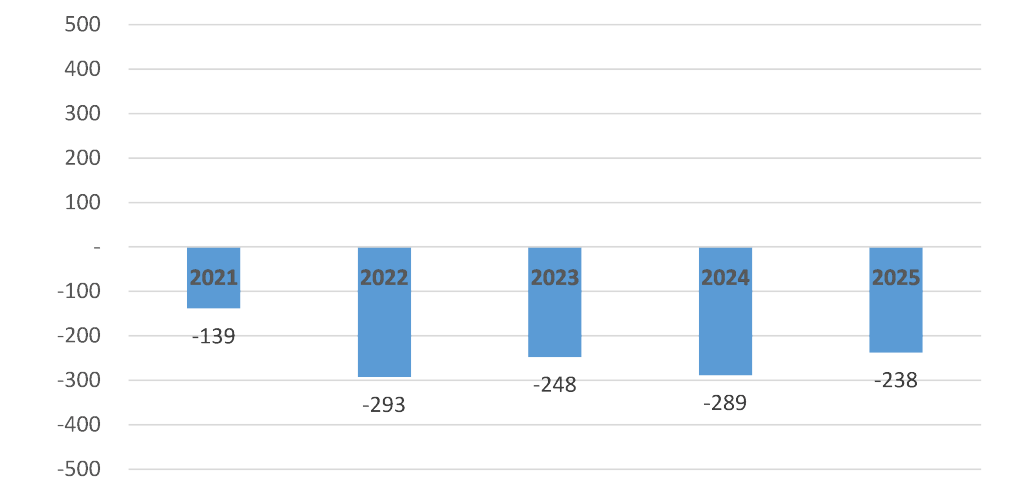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수지 1* (H=A-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549	5787	2	2	0	-238
일반회계	5477	5644	0	0	0	-167
기타 특별회계	69	124	0	0	0	-55
기 금	3	20	2	2	0	-17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 + 순융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산출(별첨)

최근5년 통합재정수지 현황

(단위:억원)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우리 구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년 연속 적자였으나, 적자폭은 전년대비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4년 적자폭은 약 22억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3 재정운용계획

3-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534	6,127	6,200	6,278	6,421	31,560	-0.40
자 체 수 입	2,490	2,371	2,426	2,529	2,537	12,353	0.50
이 전 수 입	3,455	3,281	3,297	3,271	3,404	16,708	-0.40
지 방 채 등	40	0	0	0	0	4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49	475	477	478	479	2,458	-3.30
세 출	6,534	6,127	6,200	6,278	6,421	31,560	-0.40
정 책 사 업	5,428	5,112	5,127	5,219	5,308	26,193	-0.60
경 상 지 출	1,106	1,015	1,073	1,060	1,113	5,367	0.20

▶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 - 1] × 100

③-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2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8	15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4	66
성별영향평가사업	9	8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6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 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③-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주민 주도적 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 참여적 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5년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6	12	46	12	0	0	0	0	0	0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③ - 4 성과계획서

-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25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1	121	223	278	5,775	5,390	385
의회사무과	1	1	2	1	12	13	-1
기획예산실	1	2	5	9	207	146	61
법무감사실	1	1	4	4	3	2	1
홍보체육실	1	5	10	10	102	64	38
행정관리국	1	23	34	46	1,040	944	97
주민생활국	1	21	41	48	2,077	1,793	284
도시개발국	1	26	46	46	381	440	-59
영종행정국	1	19	34	41	1,292	1,322	-30
영종건설국	1	18	27	37	481	542	-60
구출범단 준비단	1	2	5	2	34	0	34
보건소	1	3	15	34	146	124	21



③ -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42.07	48.03	49.31	23.73	59.64	28.81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인건비 : 보수(101-01), 기타직 보수(101-02),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우리 구는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28.81%입니다.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 2025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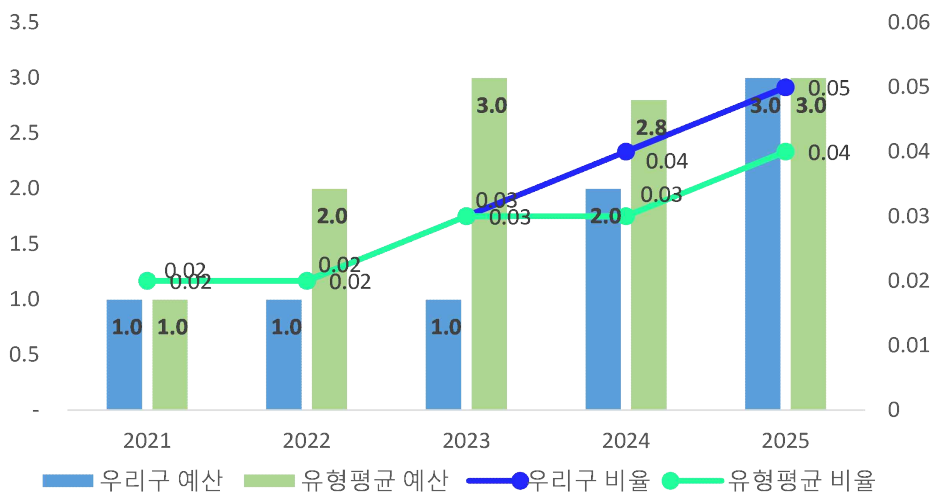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839	3	1	2	0.05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최근 5년 국외여비 규모 및 비율 현황



우리 구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지속 상승추세이며,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는 비슷한 편입니다.

③ -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 구가 2025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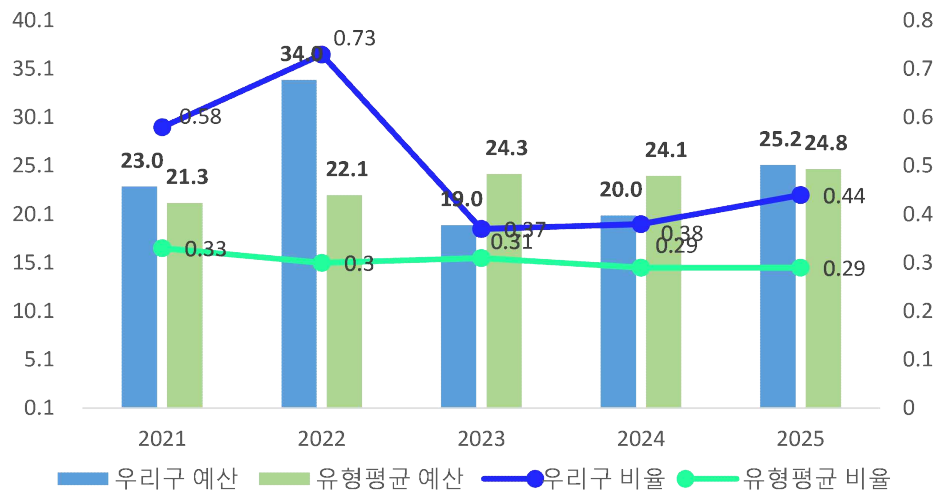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71,555	2,515	0.44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 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 시설비 (401-04)

최근 5년 행사축제경비 규모 및 비율 현황

(단위:억원, %)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2023년도 이후 지역행사 증가로 인해 지속 상승추세이나, 2025년 기준으로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액 비율은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③-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구의 2025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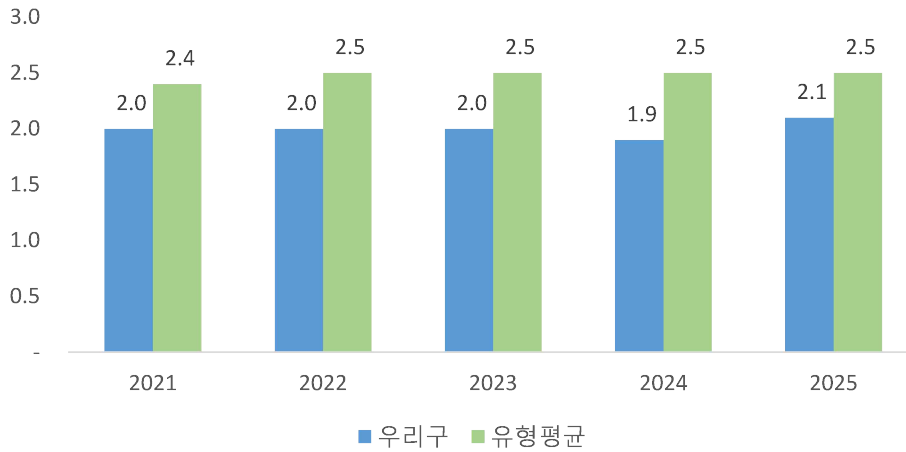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29	206	68	37	101	90.00

최근 5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위:억원)



우리 구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23년 이후 지속 감소추세이며 유형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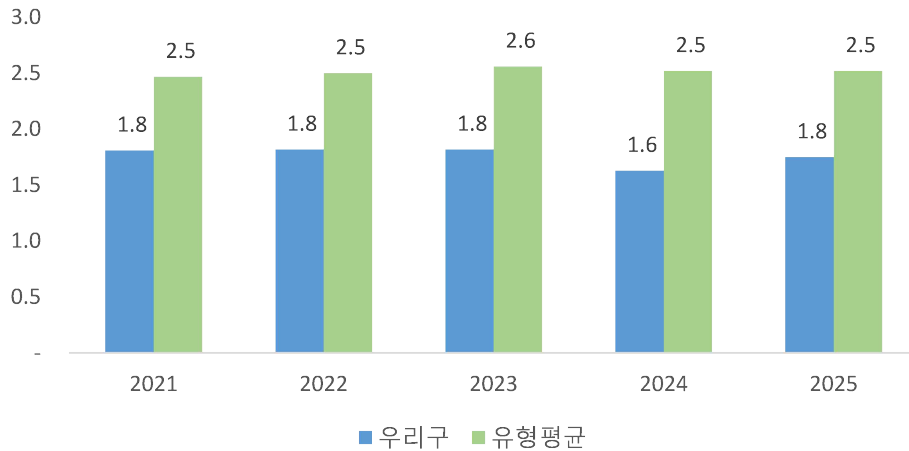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9	1.8	90.2

※ 총액한도 이상 편성시, 과편성 사유 입력.

최근 5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단위:억원)



우리 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3년 이후 지속 감소추세이며 유형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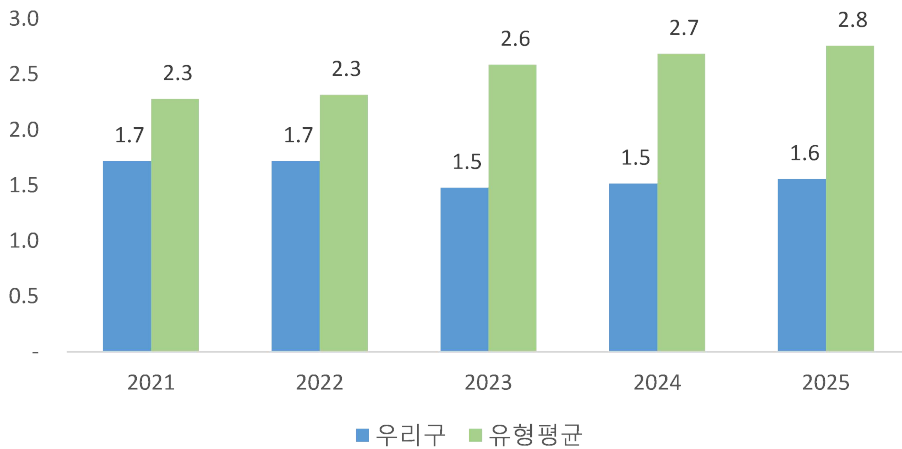
☐ 우리 구의 2025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56	1.56	0.31	0.76	0.42	0.07	100

최근 5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단위:억원)



우리 구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2023년도 이후 상승추세이긴 하나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적은수준입니다.



③ -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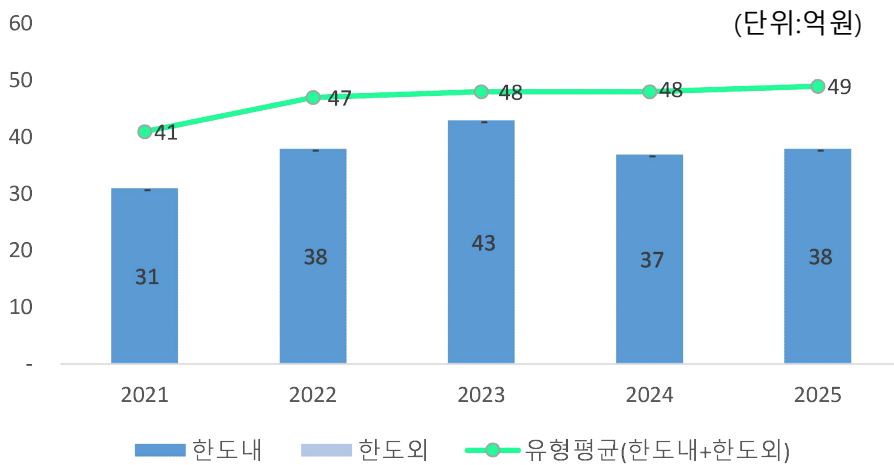
-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구의 2025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총액한도(A)	예산편성액			총액한도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액한도 대상 편성액(B)	총액한도 대상 제외 편성액(C)*	
76	38	38	0	50.78

-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최근 5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은 2023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도 적은 수준입니다.

③ -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 우리구의 2025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5,839	78	1.33%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③-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00	1,825,400	1,521
공무원 일·숙직비	3,223	193,3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260	2,055,900	1,632

※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수 있음

<각 항목별 기준액>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1인당 1,492,000원 (출산축하 특별포인트 별도)
- 공무원 일직비 : 1인당 60,000원, 숙직비 : 60,000원
- 통·리장 활동보상금 : 1인당 400,000원 이내
- 반장활동 보상금 : 1인당 50,000원

③ -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 우리구의 2025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일반예비비 비율 (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비율 (C/A)
5,716	25	0.43	0	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4 재정운용성과

4 -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 -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 -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 2025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4 -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 2025년에 우리 구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